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531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남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8. 12.
판 결 선 고	2016. 9.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15. 7. 16.에 한 재산세 4,534,560원, 지역자원시설세 1,632,780원, 지방교육세 709,980원의 각 부과처분, ② 2015. 8. 10.에 한 취득세 14,273,480원, 농어촌특별세 1,206,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1) 원고는 재산세 6,877,320원 및 취득세 15,479,93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도 포함되어 있고, 취득세 과세처분에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농어촌특별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와 같은 각 세목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또한 원고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처분일자를 2015. 7. 16.로 특정하였으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각 부과처분일자는 2015. 8. 10.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일자를 '2015. 7. 16.'로 기재한 것은 오기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4. 9. 4. [redacted]구 B 대 598.7㎡ 및 이를 대지로 건축되어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1억 1,000만 원에 취득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8,440만 원, 농어촌특별세 422만 원, 지방교육세 844만 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취득한 2014. 9. 4. 당시 이 사건 건물의 2층에는 ① 객실 4개(면적 61.75㎡)와 주방, 복도로 구성된 위락시설 부분(전용면적 94.28㎡, 계산대와 화장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하 '위락시설'이라고 한다)과 ② 객실 2개(면적 25.2㎡), 계산대, 주방, 화장실, 복도로 구성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분(전용면적 75.07㎡, 이하 '근린시설'이라고 한다)이 각 존재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C가 근린시설에서 운영하였던 'D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고 한다)의 영업이 폐지되었으므로 근린시설에 관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0. 31. 현장조사를 한 후 2014. 11. 25.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영업이 폐지되었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린시설에 관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24. 피고로부터 위락시설에 관한 식품접객업[영업형태; 룸살롱, 영업장 면적 94.2㎡(조리장 8.4㎡ + 객실 62.8㎡ + 기타 23㎡)] 영업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위락시설에서 'E'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이 117.2㎡[= 영업장 전용면적인 위락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설 94.28㎡ +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의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안분면적 22.92㎡{= 이 사건 주차장 면적 356.74㎡(= 이 사건 건물 2층 바닥면적 401.54㎡ -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면적 44.8㎡) ×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장 전용면적 94.28㎡/이 사건 건물 연면적 1467.64㎡,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로 100㎡를 초과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 객실면적이 61.75㎡로 영업장 전용면적 94.28㎡의 50%를 초과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① 2015. 7. 16. 재산세 4,534,560원, 지역자원시설세 1,632,780원, 지방교육세 709,98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② 2015. 8. 10. 취득세 14,273,480원, 농어촌특별세 1,206,45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한편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은 2015. 8. 4. '이 사건 유흥주점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015. 8. 5. '근린시설에 있던 이 사건 노래연습장 부분 역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장에 해당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이 6개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중과세대상 면적을 169.35㎡(이 사건 노래연습장 전용면적 75.07㎡ + 이 사건 유흥주점 전용면적 94.28㎡)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발하면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객실 2개 내에 있던 노래반주기를 치우자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은 2015. 8. 10. 다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현장조사를 거쳐 '이 사건 노래연습장 부분은 일반과세 대상으로 보고 위락시설 부분만을 중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에 이루어진 위 마. ①항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유흥주점만을 중과세대상으로 한정하여 위 마. ②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 8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주차장의 유흥주점용 안분면적 22.92㎡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주차장 안분면적을 제외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이 100㎡를 넘지 않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의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래연습장 객실 2개는 이 사건 유흥주점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화장실 등도 이 사건 유흥주점의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 영업장(근린시설) 면적 75.07㎡도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전용면적"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주차장의 유흥주점용 안분면적 22.92㎡에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 면적 61.75㎡을 더한 84.6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장 전용면적 192.27㎡[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영업장(위락시설) 면적 94.28㎡ + 이 사건 주차장의 유흥주점용 안분면적 22.92㎡ +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영업장(근린시설) 면적 75.07㎡]의 100분의 50에 못 미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 목은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를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흥주점 영업장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용면적을 포함시켜야 한다.

나) 통상 건물 내 부설주차장은 특정 용도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거나 구획되지 아니한 이상 건물 이용객 전체의 편의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시설이라고 볼 것인바,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에는 이 사건 주차장이 설치되어 이 사건 건물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내에 다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주차장이 특정 용도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거나 구획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의 면적을 안분하여 이를 이 사건 유흥주점의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에 포함시켜 그것이 10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은 앞서 본 구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전용면적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흥주점의 객실 면적과 영업장 전용면적을 서로 비교하여야 하는 것인데, 영업장 전용면적에는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차장 면적은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취득한 날로서 이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기준일이 되는 2014. 9. 4. 기준(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참조)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전용면적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영업장 면적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2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주방, 객실은 구조적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주방, 객실과는 구별되어 있고, 이전부터 이 사건 노래연습장과 이 사건 유흥주점은 별개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2014. 9. 4. 당시까지도 이 사건 노래연습장 부분에 관한 별개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사업자등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주방, 객실의 각 면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유흥주점이 아닌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전용면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 내에 화장실, 계산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 내에만 화장실, 계산대가 존재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의 고객들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 내의 화장실, 계산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 내의 화장실, 계산대는 구조적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과는 구분되어 있고 이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인 이상, 이 사건 유흥주점과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영업이 다른 영업주체에 의하여 별개로 운영되고 있었거나 당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더라도 객관적으로 별개의 영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이 사건 노래연습장 내의 화장실, 계산대는 이 사건 유흥주점 및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이용객 전체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시설로 그 각 면적은 이 사건 유흥주점과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공용면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원고 직전의 이 사건 유흥주점 부분(위락시설)의 영업자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영업장 부분을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만을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2014. 9. 4. 당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영업허가가 이루어지기 전으로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이 개시되지도 않았던 때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 부분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9. 4.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전용면적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영업장 면적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중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관련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장 전용면적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영업장 면적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 등 참조). 또한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이고(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8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인바(지방세법 제114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에 따른 2015년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자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5. 6. 1.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2015. 6. 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 6. 1.을 기준으로 한 재산세 중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2 내지 23호증, 을 제5,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노래연습장(근린시설)에 관한 노래연습장업 등록이 2014. 11. 25. 원고가 신청한 바에 따라 영업 폐지 상태임을 이유로 피고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된 이후 근린시설에서 다른 영업이 이루어진 바 없었던 점, ②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장 내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야만 하는데(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참조),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사건 유흥주점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피고가 근린시설에 설치되어 있던 화장실 시설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화장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2014.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하였던 점, ③ 원고가 근린시설에서의 영업을 위한 노래연습장업 등록이 직권 말소되도록 하고 이후 다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근린시설의 계산대, 화장실 부분을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만을 위한 계산대, 화장실로 사용하여 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흥주점의 고객들로 하여금 근린시설 쪽에 설치된 출입구와 내부 복도를 통하여서도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왔던 이상, 근린시설 내 계산대, 화장실, 내부 복도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만을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피고가 2015. 8. 4. 이 사건 건물에서 실시한 현지출장조사결과에 의하면, 근린시설의 객실 2개의 출입문에는 각 "사무실"이라는 푯말이 부착되어 있었으나, 객실 내부에 컴퓨터 등 별도의 사무기구나 사무용품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테이블, 소파, 반주기, 스피커, 모니터 등 노래방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서, 근린시설의 객실 2개 역시 객관적으로 유흥주점 객실로 이용 가능한 실체를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원고가 이를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을 위한 유흥접객원의 대기장소 등으로 이용하여 왔던 이상, 근린시설의 객실 2개 역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을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5. 6. 1. 당시 위락시설 부분은 물론 종전에 노래연습장 영업이 이루어졌던 근린시설 부분 전체도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전용면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2015. 6. 1.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재산세 등 부과에 있어서 객실 면적은 86.95㎡(= 위락시설 객실 4개 합계 61.7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 근린시설 객실 2개 합계 25.2㎡)로 영업장 전용면적 169.35㎡(= 위락시설 94.28㎡ + 근린시설 75.07㎡)의 51.34%에 해당함이 계산상 분명하므로[위 근린시설 객실 2개의 면적 25.2㎡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당시 제출된 설계도면에 따라 산출된 것인데, 피고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2015. 8. 4.자 출장결과보고서(을 제5호증)에 기재된 위 근린시설 객실 2개의 면적 합계 24.62㎡(= 11.74㎡ + 12.88㎡)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 면적은 86.37㎡(= 위락시설 객실 4개 합계 61.75㎡ + 근린시설 객실 2개 합계 24.62㎡)로서, 이는 영업장 전용면적 169.35㎡의 51%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유흥주점은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인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 면적이 61.75㎡로 영업장 전용면적 94.28㎡의 50%를 초과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이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하여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훈

판사 박용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판사 황여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8. 재산세: 과세기준일

10. 지역자원시설세

사.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

11. 지방교육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01

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끝.